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2월 29일
중 소 기 업 청 장

1. 개정이유

중소기업청이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누산벌점이 10점을 초과해야 하는데(시행규칙 제5조의3),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 처벌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, 상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조건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조건을 완화

- 1) 상생법 제27조 제5항의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”란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(안 제5조의3 제2항 개정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동반성장지원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의 “정보공개 - 법령정보 - 공고”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
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
(전화 : 042-481-8966, Fax : 042-472-8960)

붙임 : 규제영향분석서 1부.

규제영향분석서

예비심사 안건

의안번호	제 2014- 호
의 결 연월일	2014. . . (제 회)

의 결
사 항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
시행규칙 개정령(안)
(신설 · 강화규제 심사안)

제 출 자	중소기업청장 한정화
제출연월일	2014. . .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□ 요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 규제내용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	중소기업청이 상생법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누산벌점이 10점을 초과해야 함	중소기업청이 상생법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해야 함

□ 제도(개정안) 개요

(도입배경)

- 중기청이 상생법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누산벌점이 10점을 초과해야하나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

(추진방안)

- 상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기준을 완화

(주요내용)

-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기준을 누산벌점 5점으로 하향 조정

Ⅱ. 규제심사안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개정안

① 규제 강화 내용

- 중소기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기준을 누산별점 5점으로 하향 조정
- ⇒ (사유) 기존의 제한 요청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,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위반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잠재적인 위반을 억제하고자 함

<신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3 (별점의 부과기준 등) ② 법 제27조제5항에서 “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” 란 별표에 따른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5조의3 (별점의 부과기준 등) ② 법 제27조제5항에서 “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” 란 별표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.

② 규제영향분석서

[분석대상 규제의 개요]

1. 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미등록규제			
	규제사무명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		
2. 구분	등록변경사유	신설	등록단위		
	성격별분류		유형/구분		
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산업통상자원부	제안부처	중소기업청	
	담당부서	동반성장지원과	처리기관		
	작성자 인적사항	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김상욱 사무관			
4. 근거법령명 등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			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누산별점 5점 초과인 위탁기업	추정불가	입법예고	
	이해관계자	위와 거래하는 수탁기업	추정불가	입법예고	
	관련부처	공정거래위원회 등		입법예고	
6. 규제존속기한	없음				
7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규제의 내용	<p><현행규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기청은 누산별점이 10점을 초과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<p><강화규제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기청은 누산별점이 5점을 초과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<p>⇒(사유) 제한 요청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상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 존재</p>				
8. 규제체계도	<pre> graph LR A[상생법 위반업체] --> B[벌점부과] A --> C[누산별점 (5점)초과] C --> D[중소기업청장] D --> E[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] E --> F[중앙관서의 장] </pre>				

【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】

가. 규제의 필요성

1) 문제정의

- 상생법 위반행위로 받은 벌점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면 중기청은 관계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 가능
 - 그러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*
- * 2008년 현재의 기준으로 개정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사례 없음

2) 규제의 강화 필요성

- 위탁기업의 법 위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처벌 및 억지효과 미약
- 잠재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준 강화 필요

나.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1) 규제대안의 검토

-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(누산점수 10점)

< 비용·편익 분석 비교표 >

	비용	편익
직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▫ (피규제자 비용) 없음▫ (사회적 비용)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▫ (수혜자 편익) 없음▫ (사회적 편익) 없음

간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(피규제자 비용) 없음 ▫ (사회적 비용)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미비로 인한 거래질서 미개선, 하도급법과의 집행 불균형으로 혼란 초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(수혜자 편익) 없음 ▫ (사회적 편익) 없음
----	--	--

2) 개선안의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가) 규제의 비용

(피규제자* 비용)

* 누산벌점 5점 초과하는 위탁기업

○ 직접비용 : 입찰참가기회 배제로 인한 기대이익의 상실

* 다만 중기청은 요청을 할 뿐이고 실제 집행은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제한 사례나 발생 비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, '08년 이래 1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733개 업체 중 현재까지 누산벌점 5점을 초과한 사례 없음

○ 간접비용 : 없음

(사회적 비용)

○ 직·간접비용 : 없음

* 현행 기준을 변경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 행정력 투입 불필요

나) 규제의 편익

(수혜자 편익)

* 해당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

○ 직접편익 : 없음

○ 간접편익 : 위탁기업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억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감소

□ (사회적 편익)

- 직접편익 : 없음
- 간접편익 : 추가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위탁기업의 개선노력이 제고되고,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거래 안정성이 높아지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어 거래질서 개선 효과

다) 비용과 편익의 비교

- 규제 강화로 기대이익이 상실되는 등 추가 비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, 규제 대상 위탁기업의 수는 매우 적고 추가 비용도 확정적 비용이 아닌 발생 가능성에 불과
- 반면 규제 강화로 위탁기업이 위반행위를 할 유인은 낮아지고 벌점 경감을 위해 거래내용을 개선할 유인은 높아지므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볼 것임

< 비용·편익 분석 비교표 >

	비용	편익
직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(피규제자 비용) 입찰참가기회 배제로 인한 기대이익의 상실 ▫ (사회적 비용)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(수혜자 편익) 없음 ▫ (사회적 편익) 없음
간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(피규제자 비용) 없음 ▫ (사회적 비용)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(수혜자 편익) 불공정거래행위의 억지 효과로 인해 부당한 거래에 의한 피해 감소 ▫ (사회적 편익) 추가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위탁기업의 개선노력이 제고되며, 수급사업자의 거래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어 거래질서 개선

3)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

중소기업 관련 규제 여부

-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이 위탁사업자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 가능 여부

- 시정조치 유형별로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되므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음

다.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

1) 규제의 적정성

- 별도의 규제 신설 없이 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에서 적용 기준만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규제라 판단됨

2) 이해관계자 협의

- 입법예고 예정, 필요 시 별도 협의

3) 규제집행의 실효성(집행자원과 능력)

- 기존의 규제에서 적용범위만 변경한 것으로 집행 상 어려움 없음